

[별표 5] <개정 2017.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 제도를 위반한 경우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 그 밖의 사항 위반	법 제110조제3항 제1호	25 15	50 30	100 5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호	15	30	50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3호	15	30	50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1호	250	5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4호	25	50	100

바. 법 제22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5호	25	50	100
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6호	80	160	300
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7호	80	160	300
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9호	50	100	200
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0호	80	160	300
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1호	15	30	50
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2호	50	100	20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3호	25	50	100
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4호	25	50	100
너.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	25	50	100
더.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1)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2		120 50	
러. 법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3	100	200	300
머.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경우	법 제110조제1항	500	1,000	2,000
버.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4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50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00		
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5	200		
어.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5호의6	50		
저. 법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5호	15 100	30 100	50 100
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110조제4항	50	100	200
커. 법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7호	10		
터.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8호	100		
피.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19호	10		
허.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0조제2항 제2호	250	500	1,000
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법 제110조제2항 제3호	250	500	1,000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노.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도.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모.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보. 법 제67조에 따른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25	50	100
소. 법 제68조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통항로 진행방향 위반 2) 그 밖의 항법 위반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25 15	50 30	100 50
오. 법 제70조에 따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조.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추월선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초. 법 제72조에 따른 선박이 서로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코. 법 제73조에 따른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토. 법 제74조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 피항선의 동작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포. 법 제75조에 따른 침로 및 속력을	법 제110조제3항	10	20	30

유지하여야 할 선박이 유지선의 동작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2호			
호. 법 제76조를 위반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법 제7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는 제외한다)이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
구. 법 제77조에 따른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이 지켜야 할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5	30	50
누. 법 제78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5	30	50
두. 항행 중인 선박이나 어선·조종불능선 또는 조종제한선 등이 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5 10	30 20	50 30
루.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정박선, 얹혀 있는 선박, 수상항공기 또는 수면비행선박이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3호	10 10	20 20	30 30
무. 법 제91조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부. 법 제92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수. 법 제93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5	30	50
우. 법 제94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주. 법 제95조에 따른 신호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4호	10	20	30
추. 법 제96조에 따른 합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0조제3항 제22호	10	20	30